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03호 2014. 6.12 (목요일)

<b>선 람</b>	<b>기 관 의 장</b>
----------------	----------------------------

##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02호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2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4-4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66차) .....            4
- 하동군 고시 제2014-47호        특정관리대상시설 물놀이 위험지역의 지정 고시.....            6
- 하동군 고시 제2014-4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67차) .....            7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4-397호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사자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공고문...    9
- 하동군 공고 제2014-407호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0
- 하동군 공고 제2014-411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 하동군 공고 제2014-419호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0
- 하동군 공고 제2014-422호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43
- 하동군 공고 제2014-423호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            46
- 하동군 공고 제2014-424호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 규칙 정비를 위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            49
- 하동군 공고 제2014-425호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 규칙 정비를 위한 하동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폐지규칙안.....            57
- 하동군 공고 제2014-431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0
- 하동군 공고 제2014-433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70
- 하동군 공고 제2014-434호        하동군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74

<b>회 람</b>									
----------------	--	--	--	--	--	--	--	--	--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4년 6월 12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02호

###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용도 · 규모 ·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 · 운행기준**

용 도	규 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
승 용 (전용)	대형 승용차	군수, 군의회 의장, 부군수 (배기량 2,000cc 이상 3,000cc 이하)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업무용)	중형 승용차	차량관리기관	<u>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 연한 7년 이상)</u>
	소형 승용차		
경형 승용차	차량관리기관		
짚형 및 다목적 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다목적형 차량)			
승합용	대형 승합차	차량관리기관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8년
	중형 승합차	차량관리기관	<u>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 연한 7년 이상)</u>
	소형 승합차		
	경형 승합차		
화물용	대형 화물차	차량관리기관	<u>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 연한 7년 이상)</u>
	중형 화물차		
	소형 화물차		
	경형 화물차		
특수용	렉카차	차량관리기관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u>7년</u>
	청소차	차량관리기관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7년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차량관리기관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10년
	트랙터		
	트레일러	차량관리기관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7년
기타 특수차			

※ 규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 제1호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다.

하동군 고시 제2014-46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66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5. 29.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360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접수구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110-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360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50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33	20070618	중대리 아래쪽에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53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21-27	20070618	산복도로의 지명을 사용하여 일련번호 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산23-1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814	20070702	하동군 옥종면과 산청군 단성면의 첫글자를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157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동서길 32-3	20080402	마을의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라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241-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경춘로 378-34	20090702	정기룡 장군 추모 사당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의 역사성 반영	건물번호부여

**하동군 고시 제2014 - 47호**

**특정관리대상시설 물놀이 위험지역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같은 법 41조 규정에 의거 2014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일

**하 동 군 수**

대상시설(지역)			지정 사유	지 정 등 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설(지역)명	소 재 지	소 유 자 (점유자 관리자)				
송림공원	하동읍 광평리 송림공원 하류	하동군수	물놀이 위험지역	E	물놀이 금지지역 지정 표지판 설치	6월~8월말까지 안전요원 및 구명장비 비치
칠송보	옥종면 대곡리 칠송보 일원	하동군수	물놀이 위험지역	E	물놀이 금지지역 지정 표지판 설치	6월~8월말까지 안전요원 및 구명장비 비치
	-	이	하	여	백	-

하동군 고시 제2014-49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67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12.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39-1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하 동 군 공 보

( 8 ) 제 403 호

### 도로명주소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접수구분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724-4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39-1	20070618	선돌이 있어 입석이 되어 버린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380-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단천길 116-34	20070618	박달나무가 많은 시냇가 마을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935-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90-135	20070618	선돌이 있어 입석이 되어 버린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927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백혜길 57-15	20090302	마을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산4-1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045-24	20090710	2번 국도의 일부로서,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하동군공고 제2014-397호

##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오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가 격 기 준 일 : 2014. 01. 01
2. 결 정 · 공 시 일 : 2014. 05. 30
3. 결 정 · 공 시 필 지 수 : 279,038필지

읍 · 면	결정필지수	읍 · 면	결정필지수	읍 · 면	결정필지수
하동읍	23,766필	고전면	20,579필	북천면	16,266필
화개면	22,721필	금남면	24,391필	청암면	15,788필
악양면	29,218필	진교면	25,095필	옥종면	31,546필
적량면	19,547필	양보면	19,034필	금성면	14,195필
횡천면	16,892필				

4. 결 정 · 공 시 내 용 : 토지지면별 m<sup>2</sup>당 가격  
(토지지면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군청 민원과 및 읍 · 면 사무소에 비치)

### 5. 이의신청 및 처리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14. 05. 30 ~ 06. 30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서면) 군청 민원과 및 읍 · 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우편 접수 가능  
(전자민원)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민원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며,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6.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055-880-21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년 5 월 30 일

하 동 군 수

##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4. 3.

7.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예규에 부합되도록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간 통폐합시 잔여기간에 대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제1항 제6호)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안 제6조, 제7조)

(안 제6조의 별표 및 안 제7조의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협력사업비 평가배점 축소 및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다.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내용 신설(안 제13조 제4항)

- 반기별로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규정  
라.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 신설(안 제14조)

- 출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출연금액을 홈페이지와군  
공보에 공개하며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

####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 : 재무과, 전화 880-2292,  
FAX 880-2279, e-mail : tiamo770@korea.kr)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 12 ) 제 403 호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14. 5. .

제 출 자 : 하 동 군 수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4. 3. 7. 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예규에 부합되도록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간 통폐합시 잔여기간에 대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제1항 제6호)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안 제6조, 제7조)

(안 제6조의 별표 및 안 제7조의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협력사업비 평가배점 축소 및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다.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내용 신설(안 제13조 제4항)

- 반기별로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규정

라.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 신설(안 제14조)

- 출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출연금액을 홈페이지와 군 공보에 공개하며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안행부 예규 제77호, 2014. 3. 7.개정)

하 동 군 공 보

( 14 ) 제 403 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14. . . ~ 2014. . . (20일간)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일간신문, 군 공보지

3) 제출의견 : 없음

4)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 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출연금 등 처리방법) 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연금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 동 군 공 보

( 16 ) 제 403 호

[별표] 하동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u>31</u>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 (6점) - 국내 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u>7점</u>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u>7점</u> )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 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u>안전행정부</u>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대손충당금 적립율(안정성, <u>1점</u> )	(10)	(21)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u>18</u>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	(5)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4)	
3. 주민이용 편의성		(3)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20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7)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8)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u>22</u>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 능력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3)	
	나. 군과의 협력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9)	(4)



[ 별지 제1호서식 ]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금융기관별 점수		비고
<b>계</b>		<b>100</b>			
		<b>31</b>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0)			
	- 국외 평가기관	(6)			
	- 국내 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7)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			
	- 자기자본 이익율 (수익성)	(6)			
	- 대손충당금적립율(안정성)	(1)			
		<b>18</b>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b>20</b>			
3. 주민이용 편의성	가. 안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8)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b>22</b>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b>9</b>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능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나. 군과의 협력사업	(4)			

20 . . .

심사자 : 위원 (인)

하동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하 동 군 공 보

( 18 ) 제 403 호

[ 별지 제2호서식 ]

하동군 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

금융기관명 :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특점 합계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상태 평가	31								
	- 국외 평가기관	(10)								
	- 국내 평가기관	(6)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4)								
	- BIS 자기자본비율	(21)								
	- 고정이하 여신비율	(7)								
	- 자기자본 이익율	(6)								
	- 대손충당금 적립율	(1)								
2. 자치단체 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18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6)								
	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	(5)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4)								
3. 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20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7)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 리 능력	(7)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능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9								
	나. 군과의 협력사업	(5)								
		(4)								

20 . . .

하동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하동군수 귀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 제2조 (생략)</p> <p>제3조(금고 지정방법 등) ① (생략)</p> <p>1. ~ 5. (생략)</p> <p><u>&lt;신 설&gt;</u></p> <p>② (생략)</p> <p>제4조 ~ 제12조 (생략)</p> <p>제13조(금고운용 보고) ① ~ ③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p> <p>제3조(금고 지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p> <p>제13조(금고운용 보고) ①~③(현행과 같음)</p> <p>④ <u>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14조(출연금 등 처리방법) ① <u>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출연금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u></p>

## 하 동 군 공 보

( 20 ) 제 403 호

현 행				개 정 안			
[별표] 하동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하동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계		100	
1. 금융기관 의 대내외 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u>35</u>		1. 금융기관 의 대내외 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u>31</u>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대 평가	(1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대 평가	(10)	
	- 국외 평가기관	(6)			- 국외 평가기관	(6)	
	- 국내 평가기관	(4)			- 국내 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u>(25)</u>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u>(21)</u>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u>(9)</u>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u>(7)</u>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	
-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6)		-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6)			
- 대손충당금 적립율 (안정성)	<u>(3)</u>		- 대손충당금 적립율 (안정성)	<u>(1)</u>			
2. 군에 대 한 대출 및 예금금리		<u>15</u>		2. 군에 대 한 대출 및 예금금리		<u>18</u>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b>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b>				<u>(3)</u>		
3. 군민이용 편의성		20		3. 군민이용 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 역주민이용 편리성	(5)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 역주민이용 편리성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8)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u>20</u>		4. 금고업무 관리능력		<u>22</u>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 리 능력	(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 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 력	(7)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 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u>(5)</u>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u>(7)</u>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 치 단 체 와 협 력 사 업 추진능력		<u>10</u>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 치 단 체 와 협 력 사 업 추진능력		<u>9</u>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나. 군과 협력사업	<u>(5)</u>		나. 군과의 협력사업	<u>(4)</u>		

하동군 공고 제2014-411호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5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효과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최적의 시설을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이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안 제7조 별표1 추가)

- 이용료외 강습료 징수에 관한 사항(강습료 별도 10,000원)
- 부가가치세 부과관련 규정에 관한사항(이용료에 포함)

나.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내용(안 제9조 제3항 개정, 제4, 5항 신설)

-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이용기간에 따른 감면을 적용에 관한 사항
  - 3개월 이상 동시 등록시 감면율 10%
  - 6개월 이상 동시 등록시 감면율 20%

## 하 동 군 공 보

( 22 ) 제 403 호

다.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2항 신설)

- 이용료 반환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라. 각종 서식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신설)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1일까지 하동군(참조 : 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 전화 : 055-880-6443, FAX : 055-880-2069, Email : ykjeon@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기간회원”이란 일정한 기간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7조 제1항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용료 징수 등) 제1항~제3항은 현행과 같음.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별표 1】

(1인 기준 / 단위 : 원)

구 분	기준	1회 이용		월 회원	비고	
		개인	단체			
수영장	어린이	1회 2시간	2,000	1,500	30,000	○ 기준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이용료의 1/2 징수 ○ 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자는 이용료의 80%를 징수한다. ○ 강습료는 이용료와 별도로 월 10,000원 징수(신설)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신설)
	청소년 및 군인	“	2,500	2,000	40,000	
	일 반	“	3,000	2,500	50,000	
	경로우대 (65세 이상)	“	2,000	1,500	30,000	
헬스장	청소년 및 군인	“	1,500	1,000	30,000	○ 강습료는 이용료와 별도로 월 10,000원 징수(신설)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신설)
	일 반	“	2,000	1,500	35,000	
	경로우대 (65세 이상)	“	1,000	800	20,000	

하 동 군 공 보

( 24 ) 제 403 호

제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및 증명 서류와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항은 현행과 같음.

- ②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8조를 제17조~19조로 변경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각종 서식) 군수는 필요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전액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전액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유공자1명당 1명)의 경우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또는 50%	
3개월 이상 동시 등록	10%	
6개월 이상 동시 등록	20%	

※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 26 ) 제 403 호

[별지 제7호서식]

이용료면제 · 감면 신청서(제9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용종목				
이용일시				
이용목적				
면제 · 감면 사유		※ 증명서류 첨부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면제 ·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하동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신청서 (제10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회원번호	
이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이 용 내 용	이용 종목				
	등록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이용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이 용 료 반환사유					
반환처	성 명				
	반환은행 (계좌번호)				

수수료 없음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다음과 같이 이용료 반환을 결정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징수액	반 환 결정사항	반 환 결정액

결 재	담당자	담 당	소 장

하 동 군 공 보

( 28 ) 제 403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⑦ 생략. ⑧ <신 설>						제2조(정의) ① ~ ⑦ (현행과 같음) <u>8. “기간회원” 이란 일정한 기간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u>						
제7조(이용료 징수 등) ① ~ ③ 생략. <b>【별표 1】 국민체육센터 이용료</b>						제7조(이용료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b>【별표 1】 국민체육센터 이용료</b>						
(1인기준 / 단위 : 원)						(1인기준 / 단위 : 원)						
구 분	기준	1회 이용		월 회원	비고	구 분	기준	1회 이용		월 회원	비고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수영장	어린이	1회 2시간	2,000	1,500	30,000	수영장	어린이	1회 2시간	2,000	1,500	30,000	○기준시간 초과 때마다 기본이용료의 1/2 징수 ○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수영장, 헬스장 2 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자는 이용료의 80%를 징수한다. <u>○강습료는 이용료와 별도로 월 10,000원 징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u>
	청소년 및 군인	“	2,500	2,000	40,000		청소년 및 군인	“	2,500	2,000	40,000	
	일 반	“	3,000	2,500	50,000		일 반	“	3,000	2,500	50,000	
	경로우 대 (65세 이상)	“	2,000	1,500	30,000		경로우 대 (65세 이상)	“	2,000	1,500	30,000	
헬스장	청소년 및 군인	“	1,500	1,000	30,000	헬스장	청소년 및 군인	“	1,500	1,000	30,000	○<신 설> ○<신 설>
	일 반	“	2,000	1,500	35,000		일 반	“	2,000	1,500	35,000	
	경로우 대 (65세 이상)	“	1,000	800	20,000		경로우 대 (65세 이상)	“	1,000	800	20,000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  
 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및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생략.  
 ② <신 설>

제16조 <신 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및 증명  
 서류와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면제 및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면제  
 및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각종 서식) 군수는 필요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하동군 공고 제 2014 - 419호

##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하 동 군 수

1. 조 례 명 :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

2. 제안이유

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 및 용어를 반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보육교직원의 정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합법성 및 투명성을 도모 하고자 함.

나. 하동군보육정책위원회 운영조례 및 하동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을 통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 반영

- 보육시설 → 어린이집
- 보육시설의 장 → 어린이집의 원장
- 보육시설 종사자 → 보육교직원
- 종사자 → 직원

- 나.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
- 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
- 마.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 주민복지실, 전화880-2018, FAX 880-2349, e-mail yun0505@korea.kr)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동군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군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 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60퍼센트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공무원(다만, 부군수 및 보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6조제2항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8조(위원장등의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 하 동 군 공 보

( 36 ) 제 403 호

경우 공개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하“하동군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제13조(명칭과 위치) 하동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명칭	소재지
하동어린이집	경남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33
하동꿈나무어린이집	경남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60

제14조(업무) 하동군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목적 달성 업무

제15조(보육료등 수납) 하동군립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는 매년 경상남

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결정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하동군립어린이집 교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하동군립어린이집 원장·교사·영양사·간호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원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고, 그밖의 보육교사 및 직원은 수탁자 또는 원장이 임면 후 14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군수 및 원장은 시설의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직원 면직시 군수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시설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3. 「지방공무원법」상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및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5. 그 밖의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7조(전보) 군수는 하동군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다.

제18조(보육교직원의 정년) 하동군립어린이집 교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 하 동 군 공 보

( 38 ) 제 403 호

상의 정년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의 복무)** 하동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단, 보육사업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등을 준용한다

**제20조(보육교직원의 징계)** ① 하동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1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①하동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하동군립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해야 한다.

**제22조(교육)** ①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하동군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24조(위탁계약)** 군수는 하동군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하동군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 하 동 군 공 보

( 40 ) 제 403 호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은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③ 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⑤ 원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원장은 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 및 원장의 하동군립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장 비 용 및 보조금

제28조(비용의 보조)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4. 관련 행사 비용
5.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7.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8. 그 밖에 영유아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1. 수납한도액 기준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국가 평가인증시설, 평가우수시설 또는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③ 관련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보조금의 반환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5장 어린이집의 지도 및 감독

제30조(지도와명령)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1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른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과 보건복지부·경상남도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하동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용된 하동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하동군 공고 제 422호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하 동 군 수

- 다 음 -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 제안 이유 :

- 2014년 3월 대통령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 및 안전행정부, 경남도의 규제개혁 추진계획 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사항권고 등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 우리군의 기업활동 저해·주민생활 불편 규제에 대한 조례를 발굴, 개선 보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보조사업 실적보고 기한 규정 개정(안 제1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기한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2개월 이내로 규정
-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의 휠체어택시 운행지역 규정 개정(안 제2조)  
·현행 휠체어택시 관할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운행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없이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의료급여의 정지 규정 개정 (안 제3조)  
·현행 지급금의 미상환을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정지 규정 삭제

## 하 동 군 공 보

( 44 ) 제 403 호

-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장애인 생활시설 위탁기간 규정 개정(안 제4조)
  - 장애인 생활시설 위탁기간 3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규정 개선
-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공설납골당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5조)
  - 현행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 규정 개정(안 제6조)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 2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규정 개선
-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의 월 자문수당 개정(안 제7조)
  - 현행 월 150,000원을 300,000원으로 하여 도내 평균수준으로 맞춤
-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이병주문학관 위탁기간 규정 개정(안 제8조)
  - 이병주문학관 위탁기간 3년에서 5년으로 규정 개선
-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의 개정 (안 제9조)
  -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규모 제한 규정 완화
  - 농공단지 내 건폐율 제한 규정 완화
  - 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
  - 식품공장 범위에 대한 규정 개정
  -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면제대상 규정 신설
-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 규정 개정(안 제10조)
  -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을 완화 개선
-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용도 규정 개정(안 제11조)
  - 현행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규정 개선
- 「하동군 지하수 조례」의 지하수 개발시 이행보증금 기준 규정 개정(안 제12조)
  - 일괄적으로 책정한 이행보증금 기준을 상위법에 따라 규정 개선
- 「하동군 주차장 조례」의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 규정 개정(안 제13조)
  -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기준 완화 개선

○ 「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절차 규정 개정(안 제14조)

·상위법령에 따라 심의절차를 폐지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 가능

○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임대농기계 이용제한 완화 및 분소 설치 규정 개정(안 제15조)

·임대제한 조건 완화 및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 근거 마련

○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의 농업재해복구관련 운영자금 농작물 범위 규정 개정(안 제16조)

·상위법령에 따라 농업재해복구 운영자금 농작물 대상범위 개선

○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의 하동군 하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제17조)

·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신설계량기설치에 따른 신청인부담 완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자라 별도 검침 및 관리함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

·대규모 주거지 및 공장등의 신설시 신규급수 공사비의납부 기한 연장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납부 기한 및 분할 횟수 규정 완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하동군 체육시설 위탁관리 대상자 규정 개정(안 제18조)

·체육시설 위탁관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개선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25일까지 하동군에 별지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규제개혁추진단

- 전화번호 : 055-880-2973~4 (FAX:055-880-201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별지참조),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하 동 군 공 보

( 46 ) 제 403 호

하동군 공고 제 423호

###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등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

2. 제안 이유 :

- 2014년 3월 대통령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 및 안전행정부, 경남도의 규제개혁 추진계획 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사항권고 등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 우리군의 기업활동 저해·주민생활 불편 규제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상위법령 미반영 조례 폐지

· 상위법령 개정으로 도 사무로 위임

⇒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치 설치 조례」의 폐지(안 제1조)

· 상위법령 폐지

⇒ 「하동군 농지개량사업시행 조례」의 폐지(안 제2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25일까지 하동군에 별지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규제개혁추진단

- 전화번호 : 055-880-2973~4 (FAX:055-880-201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별지참조),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

제1조(「하동군 문화예술회관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의 폐지)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2조(「하동군 농지개량사업시행 조례」의 폐지) 하동군 농지개량사업시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 424호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칙 정비를 위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칙 정비를 위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하 동 군 수

- 다 음 -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 제안 이유 :

- 2014년 3월 대통령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 및 안전행정부, 경남도의 규제개혁 추진계  
획 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 권고 등 범정부  
적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 우리군의 기업활동 저해·주민생활 불편 규제에 대한 규칙을 발굴, 개선·보완하  
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하동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의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 신청 규정 개  
정(안 제1조)
  -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신축·증축)의 배수설비 설치 신청시 간소화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공유재산 매수 신청 간소화 규정 개정(안 제2조)
  - 현행 공유재산 매수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 간소화
-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제안제도 제안서 반환관련 규정 개정(안 제3조)
  - 현행 제안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의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규정 개정(안 제4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개선

## 하 동 군 공 보

( 50 ) 제 403 호

- 「하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규정 개정(안 제5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상위법령의 규정 반영 개선
  - 「하동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지방세 세무조사 선정 조건 규정 개정(안 제6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선정 조건 완화
  -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 제7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 항목 개선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25일까지 하동군에 별지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규제개혁추진단
    - 전화번호 : 055-880-2973~4 (FAX:055-880-2019)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별지참조),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 규칙 정비를 위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 신축 또는 증축 등의 허가나 신고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2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위원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5조(「하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하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 할 것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하동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제12조의2제5호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7조(「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 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 54 ) 제 403 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배수설비설치 신청) ①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제3조(.....) ① ..... ..... 단 만,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 신축 또는 증축 등의 허가나 신고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매수신청) ① 실·과 및 청·소의 장은 공유 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5. (생략) 6. <u>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u> 7. <u>등기부등본</u> 8. <u>도시계획확인원</u> 9. <u>도면</u> 10. (생략) ② (생략)	제21조(.....) ① ..... ..... 1~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현행과 같음) ② (생략)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안의 접수) ① (생략)  ② <u>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제안자가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를 10일 이내에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u>	제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6. (생 략)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회 부할 필요가 있다고 <u>위원장이</u> 인정하는 사항	제3조(.....) ..... 1~6. (현행과 같음) 7. .... <u>군수</u> <u>가</u> .....

하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지역의 경우 : 소매 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50호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 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차량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또는 독립마 을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⑤ (생 략)	제3조(.....) ① ..... <u>제3항</u> ..... ..... 1. <u>소매인</u>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삭 제) ②~⑤ (현행과 같음)

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생 략) 1~3. (생 략) 4. 최근 <u>3년</u>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8조(.....)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u>4년</u> .....
제12조의2(직접조사의 범위) (생 략) 1~4. (생 략) 5. 최근 <u>3년</u>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	제12조의2(.....)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u>4년</u> .....

하 동 군 공 보

( 56 ) 제 403 호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위반행위별포상금지급기준		[별표 1] 위반행위별포상금지급기준	
위 반 행 위	지급액	위 반 행 위	지급액
(생 략)	20만원	(현행과 같음)	.....
(생 략)	20만원	(현행과 같음)	.....
(생 략)	20만원	(현행과 같음)	.....
(생 략)	20만원	(현행과 같음)	.....
(생 략)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 자 5만원	(현행과 같음)	..... .....
(생 략)	10만원	(현행과 같음)	.....
(생 략)	10만원	(현행과 같음)	.....
(생 략)	10만원	(현행과 같음)	.....
(생 략)	10만원	(현행과 같음)	.....
(생 략)	10만원	(현행과 같음)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 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 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 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삭 제)	(삭 제)
(생 략)	10만원	(현행과 같음)	.....
(생 략)	10만원	(현행과 같음)	.....
(생 략)	5만원	(현행과 같음)	.....
(생 략)	5만원	(현행과 같음)	.....
(생 략)	5만원	(현행과 같음)	.....



하동군 공고 제 425호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칙 정비를 위한  
하동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칙 정비를 위한 하동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폐지규칙안

2. 제안 이유 :

- 2014년 3월 대통령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 및 안전행정부, 경남도의 규제개혁 추진계획 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사항권고 등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 우리군의 기업활동 저해·주민생활 불편 규제에 대한 규칙을 폐지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하동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의 폐지 (안 제1조)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과 중복되어 폐지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25일까지 하동군에 별지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규제개혁추진단
- 전화번호 : 055-880-2973~4 (FAX:055-880-201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별지참조),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58 ) 제 403 호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 규칙 정비를 위한  
**하동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폐지규칙안**

하동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14- 431호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6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2013. 4월 신설된 국민체육센터 운영결과 발생된 보완사항 및 건의 사항 등을 조례에 추가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 시설관리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가. 이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안 제7조 별표1 추가)
    -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강습회원 별도 월 10,000원 추가 징수)
    - 부가가치세 부과관련 규정에 관한사항(이용료에 포함)
  - 나.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내용(안 제9조 별표2 추가, 제3항 개정)
    - 기간회원에 따른 감면을 적용 신설(별표2)
      - 기간회원이 3개월 이상 동시 등록시 감면율 10%
      - 기간회원이 6개월 이상 동시 등록시 감면율 20%
    -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다.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2항 신설)

- 이용료 반환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라. 각종 서식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신설)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하동군(참조 : 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 전화 : 055-880-6443, FAX : 055-880-2069, Email : ykjeon@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간회원”이란 3개월 이상 등록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및 증명 서류와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항은 현행과 같음.

②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8조를 제17조~제19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각종 서식) 군수는 필요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별표 1중 비고란에 다음 사항을 각각 신설한다.

- 강습료는 이용료와 별도로 월 10,000원을 징수한다.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별표 2의 구분란과 감면율란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10%	
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20%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제7조 관련)

(1인 기준 / 단위 : 원)

구 분	기준	1회 이용		월 회원	비고	
		개인	단체			
수영장	어린이	1회 2시간	2,000	1,500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이용료의 1/2 징수</li> <li>○ 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li> <li>○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자는 이용료의 80%를 징수한다.</li> <li>○ 강습회원은 이용료와 별도로 월 10,000원 추가 징수한다.</li> <li>○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한다.</li> </ul>
	청소년 및 군인	“	2,500	2,000	40,000	
	일 반	“	3,000	2,500	50,000	
	경로우대 (65세이상)	“	2,000	1,500	30,000	
헬스장	청소년 및 군인	“	1,500	1,000	30,000	
	일 반	“	2,000	1,500	35,000	
	경로우대 (65세이상)	“	1,000	800	20,000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전액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전액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유공자1명당 1명)의 경우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1]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또는 50%	
기간회원이 3개월 이상 동시 등록	10%	
기간회원이 6개월 이상 동시 등록	20%	

※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이용료면제 · 감면 신청서(제9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용종목		
이용일시		
이용목적		
면제 · 감면 사유		※ 증명서류 첨부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면제 ·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하동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신청서 (제10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회원번호	
이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이 용 내 용	이용 종목				
	등록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이용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이 용 료 반환사유					
반환처	성 명				
	반환은행 (계좌번호)				

수수료 없음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다음과 같이 이용료 반환을 결정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징수액	반 환 결정사항	반 환 결정액

결	담당자	담 당	소 장
재			

하 동 군 공 보

( 68 ) 제 403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 ⑦ 생략. ⑧ &lt;신 설&gt;</p> <p>제7조(이용료 징수 등) ① ~ ③ 생략. 【별표 1】 국민체육센터 이용료</p> <p style="text-align: right;">(1인기준 / 단위 : 원)</p>									
<p style="text-align: right;">(1인기준 / 단위 : 원)</p>									
구 분		기준	1회 이용		월	비고			
			개인	단체	회원				
수영장	어린이	1회 2시간	2,000	1,500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시간 초과 때마다 기본이용료의 1/2 징수</li> <li>○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li> <li>○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자는 이용료의 80%를 징수한다.</li> </ul>			
	청소년 및 군인	"	2,500	2,000	40,000				
	일 반	"	3,000	2,500	50,000				
	경로우 대 (65세 이상)	"	2,000	1,500	30,000				
헬스장	청소년 및 군인	"	1,500	1,000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습회원은 이용료와 별도로 월 10,000원 추가 징수한다.</li> <li>○이용료는 부가치세 포함한다.</li> </ul>			
	일 반	"	2,000	1,500	35,000				
	경로우 대 (65세 이상)	"	1,000	800	20,000				

제2조(정의) ① ~ ⑦ (현행과 같음)  
8. "기간회원"이란 일정한 기간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7조(이용료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및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및 증명 서류와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면제 및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면제 및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전액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전액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유공자1명당 1명)의 경우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1]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또는 50%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생략.

② <신 설>

제16조 <신 설>

제16조(위탁관리)

제17조(준용규정)

제18조(시행규칙)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전액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전액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유공자1명당 1명)의 경우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1]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또는 50%	
기간회원이 3개월 이상 동시 등록	10%	
기간회원이 6개월 이상 동시 등록	20%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각종 서식) 군수는 필요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제18조(준용규정)

제19조(시행규칙)

하동군 공고 제 433 호

## 하동군 참전 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참전 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참전 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 현 조례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5만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평균수준(최고 10만원/최하5만원)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 수당지급대상자 결정 및 통보 기간을 상위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타 지자체와 같이 10일 단축(30일→20일)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금액 상향 조정 (월 5만원 → 월 7만원)
  - 안 제4조(지원사업)
- 참전명예수당 지급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개정
  - 안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통지)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복지실, 전화880-2342 FAX 880-2349, e-mail smindol@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참전 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동군 참전 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제6조 중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를 2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 적격여부를 결정하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에게 <u>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u></li> <li>2. 참전유공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li> <li>3. 그 밖에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에게 <u>참전명예수당 월 7만원 지급</u></li> <li>2. 참전유공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li> <li>3. 그 밖에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u>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통지)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u> <u>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u></p>	<p><u>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하동군 공고 제 434 호

###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 규정 중 진료비 지원액 및 연간 지급한도 등은 임의적·불필요 규정이므로 상위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수정하고,
- 조례 내 일부 중복규정 정리 및 미반영 사항 추가 등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타 지자체 조례와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3. 주요 내용 : 보훈대상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 안 제7조(복지지원 등)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복지실, 전화880-2342, FAX 880-2349, e-mail smindol@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의거 그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동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의료지원
3. 하동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다만, 각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비용 일부 지원

별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하동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가게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p> <p>2. 하동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3.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별지 서식의 신청에 의해 30%를 지원하되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4.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을 위한功德비 건립 및 상수도시설지원</p>	<p>제7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동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p> <p>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의료지원</p> <p>3. 하동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다만, 각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4.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비용 일부 지원</p>